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42

발의연월일: 2021. 8. 12.

발 의 자:황운하·김승원·김용민

장경태 · 최강욱 · 홍정민

문정복 · 김경만 · 최혜영

강득구 • 윤영덕 • 이용선

이규민 • 민형배 의원

(14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검찰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독점적 으로 영장을 청구하며, 이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현행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137조).
- 나. 검사 및 검찰청 지원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 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을 삭제함(안 제196조, 제197조의 4, 제245조의9, 제245조의10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삭제).
- 다.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 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안 제198조의2제2항).
- 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안 제 200조의3제2항).
- 마.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되,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 도록 함(안 제201조 및 제201조의3 신설).

- 바.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 삭제).
- 사.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1조의5).
- 아.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함(안 제222조 제1항).
- 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38조).
- 차.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 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하 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 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3조의2).
- 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함(안 제245조의7).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6 976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977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0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法院은 檢事"를 "법원은 검사,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檢事가"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 중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를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을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촉탁"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고"로 하고,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을 "검사 에게 집행사무를 촉탁"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본문 중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를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로 한다.

제137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138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184조제1항 중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을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한다.

제185조 중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을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한다.

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 관,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리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197조를 삭제한다.

제197조의4를 삭제한다.

제198조제2항 중 "검사·사법경찰관리와"를 "사법경찰관리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사법경찰관리와"를 "사법경찰관리와"로 한 다.

제198조의2의 제목 "(檢事의 逮捕·拘束場所監察)"을 "(검사의 체포장소감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不法逮捕·拘束의"를 "불법체포의"로, "管下搜查官署의 被疑者의 逮捕·拘束場所를"을 "관할수사기관의 피의자의 체포장소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逮捕 또는 拘束된"을 "체포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逮捕 또는 拘束된 것"을 "체포된 것"으로,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를 "체포된 자를 석방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을 "사 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 야 한다.

제200조의4제1항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를 "사법경찰관이" 로, "피의자를"을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로,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를 "검사에게"로 한다.

제200조의4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0조의5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00조의6 전단 중 "제101조제4항"을 "제101조제4항·제5항"으로,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으로"를 "으로, 제81조제1항 본문의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제81조제3항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는 "사법경찰관리가"로, 제101조제5항의 "검찰총장"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로 한다.

제201조제1항 본문 중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 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 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의 拘束令狀을 받아"를 "관할지방 법원판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 부하여"로 한다.

제201조의2제4항 중 "검사와 변호인"을 "검사, 사법경찰관과 변호인"으로 한다.

제201조의2제7항 중 "제202조 및 제203조의"를 "제202조의"로 한다. 제20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1조의3(구금장소)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제202조의 제목 "(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을 "(공소제기 전의 구속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을 "제20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한"으로, "10日 以內에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을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석방하여야"로 하며, 제2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정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3조를 삭제한다.

제203조의2 중 "第202條 또는 第203條"를 "제202조"로 한다.

제204조 중 "遲滯없이 檢事는 令狀을"을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영장을"로 한다.

제205조를 삭제한다.

제208조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를 "제201조에 따라"로 한다.

제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를 "피의자의"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본문의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는 "사법경찰관리"로, 제81조제3항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 이"는 "사법경찰관리가"로 본다.

제210조를 삭제한다.

제213조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을 "사법경찰관리 아닌"으로,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를 "사법경찰관리에게"로 한다. 제213조의2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를 "사법경찰관리가"로 한다.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14조의2제2항 중 "구속한 검사 또는"을 "구속영장을 집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檢事・辯護人・請求人"을 "검사・사법경찰관・변호인・청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을 "제202 조의"로 한다.

제21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을 "사법 경찰관은"으로, "逮捕 또는 拘束하는"을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 하는"으로 한다.

제216조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를 "사법경찰관리가"로, "拘束令狀의 執行의"를 "구속영장을 집행하는"으로 한다.

제218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은"을 "사법경찰관리는"으로 한다.

제218조의2제1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가"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로, "해당 검 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관할지방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9조 단서를 삭제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15조제1항 본문의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는 "사법경찰관리"로, 제486조의 "검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 로 본다.

제221조제1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리가"로 한다.

제221조의2제1항 중 "檢事는 第1回"를 "제1회"로, "判事에게"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판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檢事에게"를 "증인신문을 청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로 한다.

제221조의3제1항 중 "檢事는 第221條의"를 "제221조의"로, "判事에게" 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 판사에게"로 한다.

제221조의4제2항 중 "檢事가"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로한다.

제221조의5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대한 심의를 신청할"을 "지방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장의 청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결정의 취지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불복을 청구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영장의 청구를 명하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즉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장의 청구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1조의5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2조제1항 중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를 "사법경찰관이 검 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8조 중 "檢事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37조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를 "사법경찰관에게"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238조 중 "받은 때"를 "수리한 때"로, "關係書類와 證據物을"을 "제1 96조 및 제245조의5에 따라 처리하여"로 하고, 제2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그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1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242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3조 중 "檢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査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를 "사법경찰관이"로한다.

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를 "피의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하며, 같은조 제3항 본문 중 "신문에"를 "피의자는 신문 중이라도 신문에"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을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할"로, "있다"를 "있고,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제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후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

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5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245조의2제1항 중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5조의3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의"를 "사법경찰관의"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로,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45조의4 중 "검사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해당 사법경찰관의"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로 한다.

제245조의9를 삭제한다.

제245조의10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7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312조의 제목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을 "사법경찰관리 앞"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제3항 및 제4항의"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리가"로 한다.

제417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를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 2.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8條(訴訟行爲의 特別代理人)	第28條(訴訟行爲의 特別代理人)
①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	①
告人을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	
理人을 選任하여야 하며 被疑	
者를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u>法院은 檢事</u> 또는	<u>법원은 검사, 사법경</u>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찰관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32條의2(代表辯護人) ① ~ ④	第32條의2(代表辯護人)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5
被疑者에게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 <u>檢事가</u> 代表辯護人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	<u>o]</u>
한다.	
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 拘束	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
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u>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u>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u>법경찰관리가</u>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	<u>재판장, 수명법</u>

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第83條(管轄區域 外에서의 拘束 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 ① 檢 事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 揮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 區域의 <u>檢事에게</u> 執行指揮를 囑託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115條(令狀의 執行) ① 押收・ 搜索令狀은 <u>檢事의 指揮에 依</u> <u>하여 司法警察官吏가</u> 執行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② (생략)

第137條(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他人의 住居,看守者있는 家

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촉
<u>탁</u>
②・③ (현행과 같음)
第83條(管轄區域 外에서의 拘束
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 ①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
할 수 있고
검사에게 집행사무를 촉
<u>탁</u>
② (현행과 같음)
第115條(令狀의 執行) ①
사법경찰관리가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137條(拘束令狀執行과 搜索) <u>사</u>

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 다.

第138條(準用規定) 第119條, 第12 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 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u>檢事</u>, 司法警察官吏, 법원사무관등의 搜索에 準用한다.

第184條(證據保全의 請求와 ユ節次)① 檢事,被告人,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미리 證據를 保全하지 아니하면 그 證據를 使用하기 困難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第1回 公判期日 前이라도 判事에게 押收,搜索,檢證,證人訊問 또는 鑑定을 請求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第185條(書類의 閱覽等) <u>檢事,被</u> 告人,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判 事의 許可를 얻어 前條의 處分 에 關한 書類와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 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第138條(準用規定)
사법
<u> 경찰관리</u>
184條(證據保全의 請求와 ユ 節次) ① 검사, 사법경찰관, 피
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185條(書類의 閱覽等) <u>검사, 사</u>
법경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u>변호인</u>
제196조(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경
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
경찰관,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

를 수사한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 <삭 제> 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 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 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 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 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 야 한다.

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 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 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 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 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 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리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 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생 략) 제198조(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

-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第198條의2(檢事의 逮捕・拘束場 所監察) ①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拘束 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 하여금 每月 1回 以上 管下搜査官署의 被疑者의 逮捕・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여야 한다. 監察하는 檢事는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審問하고 關聯書類를 調査하여야 한다.
 - ② 檢事는 適法한 節次에 의하 지 아니하고 逮捕 또는 拘束된

_
_
_
_
_
-
_
_
_
_
_
)
-
_
_
]
<u>-</u>
_
-
_
_

전이라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즉시 <u>逮</u> 捕 또는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 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 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 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 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 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 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 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 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 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 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 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체포된
자를 석방하도록 요구할 수 있
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
<u> 경찰관은</u>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사법경찰관
<u>L</u>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 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 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 다.

② ~ ⑤ (생 략)

第200條의3(緊急逮捕) ① 檢事 또 !: 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 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 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받 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 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令 狀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 2. (생략)

②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 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 우에는 즉시 檢事의 承認을 얻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200條의3(緊急逮捕) ① <u>사법경</u>
<u> 찰관은</u>
1.•2. (현행과 같음)
②
<u>검사에게 신청하여</u>

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u>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u> 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緊急逮 捕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④ (생략)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 期間)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 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 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 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檢事는 관할地方法 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 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 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 か か 方 法 院 判 事 에 게 り あ 束 令 狀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 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
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이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
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④ (현행과 같음)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
期間) ① <u>사법경찰관이</u>
<u>제</u>
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u>검사에게</u>

- ②·③ (생 략)
-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 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 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 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야 한다.
- ⑤ (생략)
- 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 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 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 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
- 第200條의6(準用規定) 제75조, 第一第 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 條, 第83條, 第85條第1項・第3 項 및 第4項, 제86조, 제87조,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II	UU:	1	10(/	\ <u> </u>	7	7	7/1	己	Ò
٥	긔	고ス	([<u>사법</u>	경	찰관	<u>은</u> -		
_									
_									
-									
-									•
第2	00′	條ら]6(≟	集用:	規定	-) -			
_						-, 			
_									
-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 조, <u>제101조제4항</u> 및 제102조제 2항 단서의 規定은 <u>檢事 또는</u>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 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拘束"은 이를 "逮捕"로, "拘束令狀"은 이를 "逮捕令狀" 으로 본다.

第201條(拘束) ① 被疑者가 罪를 が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第70條第1項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 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 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申請하여檢事의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의拘束令狀을 받 한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u>제101</u> 조제4항ㆍ제5항
<u>\}</u>
법경찰관이
<u>으로,</u> 제81조제1항 본문
의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
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제81조의제3항의 "검사의 지휘
에 의하여 교도관이"는 "사법경
찰관리가"로, 제101조제5항의
"검찰총장"은 "수사기관의 장"
<u>으로</u>
第201條(拘束) ①
관할지방법원판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
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 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 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② ~ ⑤ (생 략)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 저 의자 심문) ① ~ ③ (생 략)

-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 ⑥ (생 략)
-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 ⑩ (생 략)
<신 설>

	~ ⑤ (현행과 같음)	a
•	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
의	자 심문) ① ~ ③ (현형	빙과
같	<u>○</u>)	
4	검사, 사법경찰관과 변호	<u> 한인</u>
	·	
(5)	~ ⑥ (현행과 같음)	
(7)		
- <u>ス</u>	네202조의	
8	~ ⑩ (현행과 같음)	
네20:	1조의3(구금장소) 제2013	존의
	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	
	때에는 수사기관이 관리	
	않는 시설에 구금하여야	<u>안</u>
<u>다</u>	<u>.</u>	

第202條(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때에는 10日 以內에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第203條(檢事의 拘束期間)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 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 를 받은 때에는 10日以內에 公 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放 하여야 한다.
- 第203條의2(拘束其間에의 算入) 第 被疑者가 第200條의2・第200條 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第 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引된 경우에는 <u>第202條</u>

- 第202條(공소제기 전의 구속기간)
- ① 제201조제1항에 따라 피의 자를 구속한-----20일 이내 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에는 석방하여야----
 - ②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정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한하여 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삭 제>

第2	03條	의2(]	句束力	其間 ⁽	에의	算入) –
_							
_							
_							
_					<u>제20</u>	<u> 2조</u>	

또는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	
疑者를 逮捕 또는 拘引한 날부	
터 起算한다.	
第204條(令狀發付와 法院에 對한	第204條(令狀發付와 法院에 對한
통지)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	통지)
의 發付를 받은 後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지 아니하거	
나 逮捕 또는 拘束한 被疑者를	
釋放한 때에는 遲滯없이 檢事	사법경찰관은
는 令狀을 發付한 法院에 그	<u> 지체없이 영장을</u>
事由를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u>.</u>
第205條(拘束期間의 延長) ① 地	<u><삭 제></u>
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査를 繼續함에 相當	
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	
는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	
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	
<u>할 수 있다.</u>	
② 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	
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 <u>檢事</u>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 제201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	조에 따라
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 다른	
	ı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하지 못한다. ② (생 략)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 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걸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u><후단 신설></u>

第210條(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 域 外의 搜査)司法警察官吏가 管轄區域外에서 搜査하거나 管 轄區域 外의 司法警察官吏의 囑託을 받어 搜査할 때에는 管 轄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조) 세계 기 ()
② (현행과 같음)
세209조(준용규정)
<u>_</u>
의자의
<u>이 경우 제81조제1항 본문의</u>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
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제81조제3항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는 "사법경찰
관리가"로 본다.

第200條의3, 第212條, 第214條, 第216條와 第217條의 規定에 依한 搜査를 하는 境遇에 緊急 을 要할 때에는 事後에 報告할 수 있다.

第213條(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

- ② (생략)

第213條의2(準用規定)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規定은 <u>檢事</u>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① (생 략)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u>구속</u>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 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 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

第213條(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
① 사법경찰관리 아닌
사법경찰관리에게
② (현행과 같음)
第213條의2(準用規定)
<u>४</u> }
법경찰관리가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구</u> 奪
<u>영장을 집행하는</u>

- 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 ⑧ (생 략)
- ⑨ 檢事・辯護人・請求人은 제4항의 審問期日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① ~ ② (생 략)
- ①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 → 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
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
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u>검사·사법경찰관·변호인</u>
<u>·청구인</u>
⑩ ∼ ⑫ (현행과 같음)
(3)
, lana
<u>제202</u>
<u> </u>
① (현행과 같음)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u><삭</u>
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第216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① <u>檢事 또는 司法</u> <u>警察官은</u> 第200條의2・第200條 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u>逮捕</u> <u>또는 拘束하는</u>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前項第2號의 規定은 <u>檢事</u> <u>또는 司法警察官이</u> 被告人에 對한 <u>拘束令狀의 執行의</u> 境遇 에 準用한다.

③ (생 략)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 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第216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① <u>사법경찰관은</u>
<u>체포하거나 구속영장</u>
<u>을 집행하는</u>
1.•2. (현행과 같음)
② <u>사법경찰</u>
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③ (현행과 같음)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u>사법경찰관은</u>
<u>_</u>

- ② 점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 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 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 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 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第218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u>檢事,司法警察官은</u>被疑者 其他人의 遺留한 物件이나所有者,所持者 또는 保管者가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

② <u>사법경찰관은</u>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
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
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u>o</u> }
© <u>기념경원단</u>
·
第218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 <u>사법경찰관리는</u>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
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u>\(\tau_{\tau} \) \(\tau_{\tau} \)</u>

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 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 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 지방법원-----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 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 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하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 <삭 제> 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 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第219條(準用規定) 第106條, 第10 | 第219條(準用規定) ------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 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 項,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第140條, 第1

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 但,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 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處分을 함에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 야 한다. <후단 신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 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 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 다.
-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犯罪의 搜査에 없어서는 아니

<u><단서 삭제></u> <u>이 경우 제1</u>
15조제1항 본문의 "검사의 촉탁
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제486조의
"검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으로 본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② 사법경찰관리는
③
<u>사법경찰관리가</u>
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前에 限하여 <u>判事에게</u>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 ② ~ ⑤ (생 략)
- ⑥ 判事는 제1항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遲滯 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 게 送付하여야 한다.
- 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 留置의 請求) ① <u>檢事는 第221</u> <u>條의</u>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 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u>判</u> 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 第221條의4(鑑定에 必要한 處分, 許可狀) ① (생 략)
 - ② 第1項의 許可의 請求는 <u>檢</u>事가 하여야 한다.

<u> </u>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판
사에게

② ~ ⑤ (현행과 같음)
6
증인신
문을 청구한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에게
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
留置의 請求) ① <u>제221조의</u>
사법경찰
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 판사
에게
<u> </u>
第221條의4(鑑定에 必要한 處分,
許可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③ • ④ (생 략)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 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 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 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 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 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 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 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3	• (4	(현	행	과	같	음))			
제	221	1조	의	5(/	사투	법경	찰	관여	إذ	신	청	한
	영	장	의	청	구	Ò	ᅧ부	-에	Ľ	비힌	<u>-</u>	심
	의)) (1									
								- – –				
					지병	방법	원	에	_	L	취	<u>소</u>
	또:	는	변	경	을	청	구축	할 -				٠.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장의 청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결정의취지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불복을 청구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영장의 청구를 명하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즉시 영장을 청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장의

-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무부령으로 정한다.
- 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 變死 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 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 視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 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 第228條(告訴權者의 指定) 親告罪 別 対 対 対 付 告訴 対 者 가 없는 境遇에 利害關係人의 申請 이 있으면 <u>檢事는</u> 10日以内에 告訴 対 수 있는 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청구는 결정서를 송부 받은 때
로부터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
<u>다.</u>
<u><삭 제></u>
/)
<u><삭 제></u>
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
<u>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u> -
<u>.</u>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空200枚(生毛描之前 七字)
第228條(告訴權者의 指定)
사법경찰관은
第237條(告訴, 告發의 方式) ① -

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 <u>檢事 또는 司法警察官</u>の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 <u>받은 때</u>에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u>.</u>
②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때
5238條(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
의 措置) ①
<u>수리한 때</u>
제196조 및 제
245조의5에 따라 처리하여
②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
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제1
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
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고소
인 · 고발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41條(被疑者訊問) <u>檢事</u> 또는	第241條(被疑者訊問) <u>사법경찰관</u>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	<u>o]</u>
에는 먼저 그 姓名, 年齡, 등록	
기준지, 住居와 職業을 물어 被	
疑者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	
야 한다.	
第242條(被疑者訊問事項) 檢事 또	第242條(被疑者訊問事項) <u>사법경</u>
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	<u> 찰관은</u>
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 하며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	
會를 주어야 한다.	
第243條(被疑者訊問과 參與者) 檢	第243條(被疑者訊問과 參與者) <u>사</u>
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	법경찰관이
察廳搜査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	
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u>사법경찰관은</u>
자 또는 그 변호인 · 법정대리	
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	
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	
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u>정당</u>	<u>피의자에</u>

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생 략)

⑤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u>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2
<u>사법경찰관이</u>
③ 피의자는 신문 중이라도 신
<u>문에</u> <u>변호인에게 조언을</u>
<u>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할있</u>
고,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
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
의 요청이 없더라도 부당한 신
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후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u>사법경찰관은</u>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 기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하다.

- 1. ~ 4. (생 략)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 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 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 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 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 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 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 여야 한다.
-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7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
지) ① <u>사법경찰관은</u>
,
1. ~ 4. (현행과 같음)
② <u>사법경찰관은</u>
<u>.</u>
사법
<u> 경찰관이</u>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u>사법경찰관은</u>

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 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할 수 있다.

1. • 2. (생략)

第245條(參考人과의 對質) <u>檢事</u>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 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 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 할 수 있 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 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 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
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은
·
1.•2. (현행과 같음)
第245條(參考人과의 對質) 사법경
찰관이
<u>.</u>
•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u>사법경찰관은 수사와</u>

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 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 을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 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 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 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 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 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u>검사</u>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 ② <u>검사는</u>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u>검사</u> 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u>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u>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경찰관은
© <u>110000</u>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
정 등) ①
6 6) 1
사법
<u> 경찰관은</u>
② 사법경찰관은
<u> 경찰관의</u>
<u>상급 경찰관</u>
<u>서의 장에게</u>
<u>.</u>

- ④ (생략)
-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u>법무부령</u>으로 정한 다.
-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지 및 제279조의8은 <u>검사의</u> 전문 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 7 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u>해당 사법경찰관</u> 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 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 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 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④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
.
제245조의4(준용규정)
사법경찰관
의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
청) ①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
찰관의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 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 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 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 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생략)
-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 | <삭 제> 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 는다.
- ③ (생략)
-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 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 다.
-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삭 제〉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 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 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57條(告訴等에 依한 事件의 <삭 제> 處理) 檢事가 告訴 또는 告發 에 依하여 犯罪를 搜查할 때에 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 날로부터 3月 以內에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 하여야 한다.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 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 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 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부개정법률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 ③ 사법경찰관 -----

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 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 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 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 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 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파준비 또는 공파 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 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하하다.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u>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④ 사법경찰관리가
۸
<u> </u>
·
© 게2칭 및 게4칭l6)
⑤ 제3항 및 제4항의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第417條(同前)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제243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등에 관한 처분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對應한 法院에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있다.

<u><신 설></u>

<신 설>

	⑥ 사법경찰관리가	_
		_
		_
		_
		_
		_
ኅ	 5417條(同前) 검사 또는 사법기	검
1		
	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u>
		_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및	拍
	원에	-

- 1.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 2.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참여 등에 관한 처분